

폐업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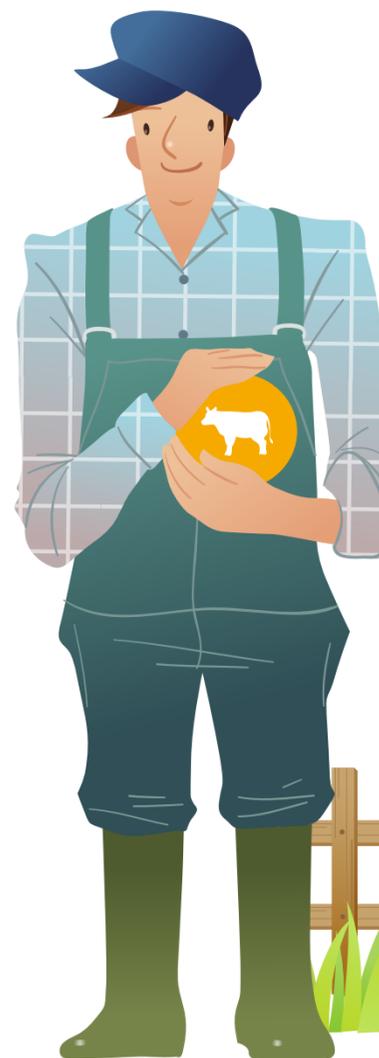
신청인	신청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지원금 신청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서·첨부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② 현지 조사·확인 후 결과는 지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 ③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사·조사 결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지급 신청 총액 산출 후 재정 여건 및 품목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보고 지시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보고 ② 해당 되는 농가에 지급 대상자 결정을 통지하고, 농가가 폐업 사실을 통보하면 확인을 거쳐 폐업지원금 지급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폐업지원금

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한우 폐업지원 사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한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

한우사업	1차	2차
신청자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또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등록을 한 자(신청일 기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한우 2마리 이상 사육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고시일 이후 (2013.5.31~12.22) 폐업농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 폐업지원 사업을 신청한 농가 -1차 신청 자격과 동일
신청기간	2013년 7월 22일 ~ 2013년 9월 21일	2013년 12월 23일~2014년 1월 17일
출하 마릿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현지확인 마릿수로 하되, 2013년 5월 31일 기준 사육마릿수 한도내에서 인정 - 송아지는 2013년 9월 21일까지 쇠고기이력제상 출생일 기준으로 인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고시일 이후 폐업농가 : 2013년 5월 31일 쇠고기이력제상 소유개체 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이 아닌 폐업농가 : 지자체 현지확인 마릿수로 하되, 2013년 5월 31일 기준 사육마릿수 한도내에서 인정 - 송아지는 2014년 1월 17일까지 쇠고기이력제상 출생일 기준으로 인정
지원기준	출하 마릿수(사육마릿수×연간 회전율)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3년	
마리당 지급단가	수소 811천원 : 마리당 순수익액(491,613원)×3년×회전율(0.55) 암소 899천원 : 마리당 순수익액(416,403원)×3년×회전율(0.72)	

사후 관리

폐업지원 대상 축사내에서는 향후 5년간 소(젓소 제외) 사육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업인이 사용하던 축사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소 사육을 할 수 없습니다.
 - 타인 소유의 소를 위탁 사육하거나, 타인에게 축사를 임대하여 사육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소유하던 축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한 자의 사육도 금지합니다.
- ※ 위의 조건을 「보조금법」에 따른 조건으로 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되고 형사고발 됩니다.

Q & A

Q. 이력제상 동일 축사 내에서 5명이 각각의 명의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나, 3명만 폐업 신고 한 경우

A. 폐업신청하지 않는 2명이 추가 신청 기간내에 폐업신청하지 않을 경우 폐업신청자 3명은 자격대상이 안됨

Q. 축사를 임대하여 한우를 사육하던 중 폐업신청을 한 경우

A. 임차인이 사육하던 축사는 향후 5년간 한우 사육이 금지됨에 따라 폐업을 신청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가능함

Q. 동일 농장 내에 3개동 축사가 개별 명의로 한우를 사육하면서 일부만 폐업 신청한 경우

A. 건축물 대장 등 축사 소유주를 확인 후 축사 동 단위로 폐업신청 가능